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10. 29.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

○ 발 의 자: 김귀화 의원 외 1인(이신자)

○ 발의일자: 2020. 10. 12.

○ 회부일자: 2020. 10. 16.

○ 상정 및 의결: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(2020. 10. 29.)

2. 제정이유

○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로 늘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여전히 청소년 노동은 비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식되거나 성희롱,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임.

○ 이에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도록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안 제3조)

나. 청소년의 권리, 청소년의 보호(안 제4조, 안 제5조)

다.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(안 제6조)

라. 시행계획, 실태조사 및 홍보·계도(안 제7조, 안 제8조)

마.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(안 제9조)

바.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(안 제10조)

사. 사업의 지원(안 제11조)

4. 관계 법령: 「청소년기본법」, 「근로기준법」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: 박성우)

○ 조례안은 오늘날 청소년의 노동이 증가하는데 비례하여 임금체불 등 노동 인권 침해 사례가 빈발하는 세태를 반영하여,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달서구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.

○ 그 주요 내용을 보면, 관내 사업장들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인권(안 제2조)을 누릴 수 있는 제반 환경의 조성(안 제3조)과 그 구체적인 추진 사업(안 제6조)을 구청장이 마련하도록 하고,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청소년 유관기관, 민간단체와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를 별도 구축(안 제9조)하며, 나아가 청소년 노동환경을 홍보 · 계도하는 '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'도 구성·운영 (안 제8조)하도록 규정.

○ 청소년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서도 「알바신고센터 지원 사업」·「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」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점에 비추어볼 때,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질적 청소년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 조례 제정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- 현행 「근로기준법」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(제17조)은 물론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(제67조)을 규정하고 있으며, 해고의 예고에 관한 사항(제26조)등도 규정하고 있음. 또한,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하고, 제19조에서는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청소년 근로자들의 '근로기준'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"특이사항 없음"

7. 토론요지: "특이사항 없음"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